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바로 알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 대상업소 및 시행시기

### 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내용

-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밥류),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뱃장어

### 나. 대상음식점 설명

- ①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②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③ 위탁급식영업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 제공
- ④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 2. 대상품목

-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이 대상이다.

- 돼지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으로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표시대상이다.
- 오리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 쌀(밥류)은 쌀(현미, 찐쌀 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다(죽, 식혜, 떡 및 면류는 제외).
-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음식이 표시 대상이다(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등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 3.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가. 쇠고기

-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되며, 팔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 소갈비(미국산)

- 3)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또는 소갈비(호주산)

#### 나.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되며, 팔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

다.

[예시] :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

###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오리불고기(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다.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닭고기

1) 닭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짬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 라. 그 밖의 공통사항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모듬회(넙치 국내산, 참돔 일본산, 조피볼락 중국산)

2)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림 1>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

## 4. 원산지 단속절차 및 방법

원산지 표시 단속은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일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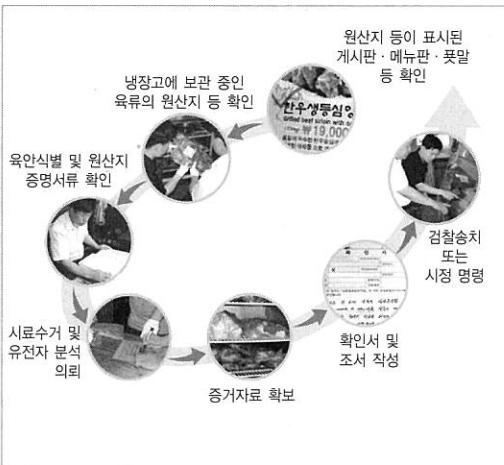
속과,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 단속으로 나누어진다.

#### 가. 사회적인 검증방법

- 단속현장에서는 우선 원산지표시 여부와 방법이 적정한가를 확인한 다음, 조리하고 남은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한다.
- 원산지표시 내용이 의심 가는 경우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적조사한다.

#### 나. 과학적인 검정방법

- DNA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쇠고기, 쌀)과 미량원소를 이용한 기기분석 등 과학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 분석결과 수입산으로 판정되는 업소



〈그림 2〉 원산지 단속절차

는 납품업체까지 추적조사한다.

#### 5. 원산지 단속체계

농식품 원산지 단속 전문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600명을 1,100명으로 확대하여 일제단속과 원산지표시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2만여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합동단속 및 사회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검역 및 통관정보 활용으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 관세청 통관정보(EDI시스템)를 실시간으로 단속원에 전파하여 「수입 → 제조 · 도매 → 최종 소비판매」 등 총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6. 영업자 준비사항

음식점 영업자는 축산물 구입 영수증을

상품명	수량	가격
1 쇠고기(국내산)	2	154,200
2 당근(국내산)	45	142,300
3 치킨(국내산)	20	3,100
4 햄(국내산)	20	62,200
5 오징어(국내산)	20	71,400
6 오징어(국내산)	10	2,200
7 콩(국내산)	10	80,000

〈그림 3〉 영업자 준비서류(거래명세표)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에 비치·보관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음식점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서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7. 위반시 처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및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8. 신고포상제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아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단속공무원이 신고사실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미표시 위반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 ○ 신고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 - 8112번

### ○ 인터넷 신고

: <http://www.naqs.go.kr>

〈표 1〉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① 쇠고기 원산지,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② 쇠고기 원산지만 미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③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④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⑤ 넙치, 조피불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⑥ 영수증 미비치	20만원	40만원	80만원